



제 418국회 (정기회)
제 1 차 정 무 위 원 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개인정보보호 시책 마련 대상 연령 하향〉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71호)

2024. 9.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7. 8.

다. 회 부 일 : 2024. 7.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의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만 14세 미만 아동뿐만 아니라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온라인 활동이 더욱 활발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고,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하여야 하는 대상 연령을 만 14세 미만 아동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기본 이념을 가진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정의인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

대하여 디지털 환경에 노출이 많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아동의 대상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② (생략)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18세 미만 아동이----- ----- -----18세 미만 아동의----- -----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 하나로,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이 조항은 2023년 3월 14일 법률 개정 시에 신설된 조항으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추가되었음.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및 아동의 보호자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아동은 공통적으로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음.

○ 구체적으로 보면, 제22조의2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38조에서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자의 권리도 함께 규정하고 있음.

[표 1] 「개인정보 보호법」상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

조항	내용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과함
제22조의2	개인정보처리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동의를 받을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확인하도록 함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도록 함
	개인정보처리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함
제38조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 중 제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와 관련하여 대상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취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 14세 이상부터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가 다양·복잡하게 이루어지는 인터넷 환경의 특성과 중·고등학생 인터넷 이용시간이 성인에 비해 적지 않음¹⁾을 고려하면 국가·지자체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시책을 마련해야 할 아동의 연령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한편, 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나친 후견주의로 인해 만 14세 이상 청소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령 확대 논의 보다는 연령대별 보호 내용·규율체계를 수립하는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다만, 개정안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법정대리인 동의 제도 등 실체 규정이 아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시책 마련 대상 연령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1) 중·고등학생의 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 약 22시간 (※ 20~30대는 약 29시간)
(2023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참고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국내외 현황을 살펴 보면, 정부는 2022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안)」 및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를 토대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며, 미국 연방 상원에서 개인정보 보호 대상인 아동의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법안이 2024년 7월 통과된 바 있음.

○ 정부는 2022년 발표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안)」 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상 보호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SNS 등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이용·제공이 활발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에서도 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와 ②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구분하여 개인정보 처리단계별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의무·권장사항으로 나누어 안내하고 있음.

○ 미국은 1998년 제정된 COPPA(Children and Te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를 개정하는 COPPA2.0 법안이 상원을 통과²⁾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법 적용을 받는 아동의 최소 연

령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하여, 기업들이 17세 미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임³⁾.

□ 한편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개정안은 ‘만 18세 미만’ 까지를 모두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법정대리인 동의 등 실체적 규정 등의 적용 대상이 ‘만 14세 미만 아동’이므로 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점,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서도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106

2) 향후 미국 연방 하원에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어야 함.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외 동향 및 사례(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어린이 및 10대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안(COPPA 2.0), 미 상원 통과”, 2024.9.5.